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
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정하여, 저수지·댐관리자로 하여금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안전 점검·정밀안전진단·보수 및 보강 등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규정(안 제1조의2)
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9. 00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4조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거나 이용 중인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바목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정의) 법 제2조제1호라</u> <u>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</u> <u>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은 다음</u> <u>각 호와 같다.</u> 1.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 제24조에 따 <u>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</u> <u>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</u> <u>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</u> <u>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</u> <u>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</u> 2.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</u> <u>법률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 <u>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</u> <u>치되거나 이용 중인 저수지의</u> <u>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</u> <u>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u> 3.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 제2조제9호바목에 따라 <u>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</u> <u>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</u> <u>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47